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37
----------	------

2018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기만, 이혜경 의원(찬성자 8명)

나. 발의일자 : 2018년 6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6월 18일

라. 상정결과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6월 2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만·이혜경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도심권에 집중되어 문화접근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 문화시설의 지역별 신설 및 확충과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투자 장려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일부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해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산업 중흥 견인,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문화시설의 자치구 지역별 균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
- (2)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장려하고 지원을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
- (3)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에 한해 대부요율을 비영리법인의 경우로 규정함(안 제45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3) 기 타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옥)

- 동 개정안은 ①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을 감안하여 설치를 활성화하고, ②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장려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③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에 한해 대부요율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만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혜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는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시설 설치와 이용 시책 강구를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동법을 근거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수의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2016년 서울연구원의 자치구별 문화시설 현황[첨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도심권에 집중되어 문화접근권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문화시설과를

신설해 서울시 자치구별 균형을 고려한 문화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명시화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기만 의원은 동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에 한해 대부요율(현행 대부요율 2.5% 이상)을 비영리법인과 같이 1.0% 이상으로 감면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5호)」을 2018년 2월 12일 발의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의 심의위원회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①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의 시설 대부요율 2.5% 이상 기준은 “국가, 지자체, 사립학교 등” 공공성이 매우 강한 경우 적용되는 요율이므로 이미 특별한 수준의 혜택이며, ② 기부채납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고¹⁾, ③ 문화시설 대부요율 할인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음에도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과 市 재정건전성에 저해된다는 서울시 재무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임.

1) '15.6.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어떠한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요율 하향 조정은 해당 지자체가 기부의 반대급부로 어떠한 위험이나 재산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는 기부채납을 할 때에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부요율의 특성상 급작스러운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대부요율의 연쇄적인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특히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시설 개수와 관람률 상승이 전국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창출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운영난을 겪을 확률이 높은 상황임.

등록공연장 수 및 문화예술관람률 통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등록공연장 수 (전년대비 증감률)	881 (6.7%)	992 (12.6%)	991 (-0.1%)	1,024 (3.3%)	미집계
서울시 등록공연장 수 (전년대비 증감률)	304	344 (3.2%)	381 (10.8%)	389 (2.1%)	397 (2.1%)
문화예술관람률 (예년대비 증감률)	60.8 (11.6%)	-	64.5 (6.1%)	-	64.0 (-0.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또한 2014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천명하며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시설의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부요율 할인을 통한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도모하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음.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66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7호)」을 상정·심의하여 원안가결한 바 있는데, 타 조례로도 사용료 요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²⁾이 주요골자여서 우리 위원회 문화본부 소관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기부채납에 한한 영리법인·개인의 문화시설 운영 대부요율 규정 삽입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는 2007년 5월 22일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그 해 9월 (주)쇼파크(가칭)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주)쇼파크는 총사업비 547억 3,600만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727-56의 시유지(舊 면허시험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연장 ‘블루스퀘어’를 건립·개관하였으며,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였음.

2007년 11월 실시협약 당시 동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은 5% 이상이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2.5% 이상로 하향 조정되었음³⁾.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블루스퀘어” 시설 개요

(2018년 현재 기준)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시유지, 舊 면허시험장 부지)
- 위탁운영자 : (주)인터파크씨어터
- 위탁운영기간 : 2011.10.28.~2031.10.27.(20년)
- 개 관 : 2011년 11월
- 규 모 : 지상 4층 ~ 지상 4층(연면적: 29,628㎡, 건축면적: 5,910.32㎡)
- 시설내용 : 뮤지컬공연장(인터파크홀) 1,766석, 대중음악공연장(아이마켓홀) 1,382석, 부대시설(인터파크VR, 북파크, 한남아트갤러리, 카페필로스, 스테이지B 등) 주차장 206면

○ (주)인터파크씨어터는 2011년 11월 블루스퀘어를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20년의 운영기간 중 7년차 운영 중이며, 개관당시 공유재산 대부금액은 8억 2,272만원(2011년)이었으나 한남동 일대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7차년도(2017~2018년) 현재 15억 7,152만 원에 달하고 있음.

※ 7차년도까지 블루스퀘어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3.5%이며, 서울시는 토지 사용료에 대한 감면(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70% 부과)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3) (주)쇼파크(가칭)은 2007년 서울시와의 실시협약 이후 (주)인터파크씨어터로 사업자명칭이 변경되었고, 서울시와 (주)인터파크씨어터는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대부요율 조정 등을 골자로 2011년 12월 30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함.

블루스퀘어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천원)

연차	공시지가	공시지가 상승률	공유재산 총사용료	당기순이익
2011~2012	3,000		822,722	-2,284,000
2012~2013	3,420	14.0%	914,234	-1,387,000
2013~2014	3,760	9.9%	1,017,117	-2,556,000
2014~2015	4,200	11.7%	1,198,270	-1,400,000
2015~2016	4,950	17.9%	1,336,418	-1,536,000
2016~2017	5,836	17.9%	1,512,700	-1,574,000
2017~2018	7,005	17.9%	1,571,518	-618,000

출처 :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7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서울시),
블루스퀘어 운영실적 확인용역 최종보고서(서울시)

(주)인터파크씨어터는 현재까지 다목적홀 주말가동률이 100%에 달하고, 뮤지컬 제작사의 대관 선호도가 국내 1위라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상승으로 적자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서울시 문화본부에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또한 2007년 실시협약 당시 421면의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서울시 건축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유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주차장이 206면으로 축소되자 주차난을 겪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60억원(증설 후 市기부채납) 규모의 주차장 증설계획⁴⁾을 세워 11월 28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부결되었음.

4) 현재까지 (주)인터파크씨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20억원의 비용으로 블루스퀘어의 1차 증축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2차 증축계획은 주차타워 신설을 비롯하여 사무실 공간 증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서울시 문화본부는 (주)인터파크씨어터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라 2018년 “블루스퀘어 운영실적 확인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진으로부터 4월 13일 최종적인 의견을 보고 받았으며,

경영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업평균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높은 편(1.5~3.0%)이며, 업계 급여 상승률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임금 상승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증축을 위한 투자금액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블루스퀘어 입장에서는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증축으로 인한 수익증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증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목적홀(아이마켓홀)의 대관일수가 뮤지컬홀(인터파크홀) 보다 적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다목적홀의 운영컨셉을 다양화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 하여 대관일수를 향상해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용역 중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블루스퀘어의 2017년 현재 누적적자 약 100억원은 운영 초기 공연시설 및 상가시설의 활성화 지연뿐 아니라, 크라제인터내셔널의 부도로 인한 대손발생, 메르스 및 세월호 등 국내 소비위축,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인한 토지사용료 급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누적금액임.
 - 공시지가상승률 및 토지사용료율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임차료는 전체 매출원가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목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18년 열람 중인 공시지가 상승률 13.4%를 고려하면 공시지가는 향후 급격한 상승이 주춤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간의 변동성이 커서 공시지가상승률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6.5~9.5% 수준을 합리적인 예측수준으로 본다면 토지사용료율은 1.5%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9.5% 이상인 경우 적정 토지사용료율은 1.0%임.

한편, 용역에서 결론내린 블루스퀘어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블루스퀘어 운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서울지역에 생산유발효과 346,166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8,431백만원, 취업유발효과 2,638명이 발생하여 블루스퀘어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일자리 창출효과도 964.9명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 개정안의 기부채납에 한한 영리법인·개인의 문화시설 운영 대부요율 감면은 ①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기부채납 활성화 도모, ② 향후 수익성이 개선된 운영 실적을 담보⁵⁾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③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① 현재 동 개정안에 의해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은 ‘블루스퀘어’ 한 곳으로 한정되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② 기존 대부요율 체계의 변동 및 형평성 문제로 재정건전성이 저해된다는 재무국의 의견⁶⁾과 ③ 대부요율은 조례입법경제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겠음.

또한, 대부요율의 적정 수준을 비영리법인(1.0%)과 같이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결론지어야 할 것임.

5) 블루스퀘어 대부요율의 경우, 2017~2018년 기준 15억 7천만원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7억 6천만원으로 51.6%인 8억 1천만원이 감소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블루스퀘어가 동 개정안을 통해 향후 2023년까지 54억 1천만원의 대부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비용추계함.

6) 서울시 재무국은 2018년 6월 19일 동 개정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저해를 우려하면서도 문화예술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안가결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으며, 서울시 문화본부는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에 찬성하였음.

-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주)인터파크씨어터의 블루스퀘어 운영에 대한 만성적인 적자가 향후 민간사업자·개인의 문화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 의지를 꺾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해야 할 것이며, 블루스퀘어 운영에 있어 동 개정안의 대부요율 감면이 어느 정도 수익개선에 도움은 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인터파크씨어터의 자구적인 노력⁷⁾과 함께 2018년 서울시 용역결과 권고된 경영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블루스퀘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그룹으로부터 연간 20억원 규모의 네이밍스폰서를 받는 등 기업 후원(현재는 모기업인 (주)인터파크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을 유치한 바 있음.

(첨부) 자치구별 문화시설 수(서울연구원 2016년도 통계)

[표 2-2] 자치구별 문화시설 수

(단위: 개)

권역	자치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생활문화시설		전수 시설	계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지역문 화시설		
도심권	용산구	13	19	7	2	15	3	5	1	65
	종로구	199	34	40	27	193	6	4	3	506
	중구	33	41	19	5	17	5	8	2	130
	소계	245	94	66	34	225	14	17	6	701
동북권	강북구	4	15	3	1	2	6	9	1	40
	광진구	20	33	4	1	2	3	3	1	66
	노원구	8	21	4	3	1	6	6	1	50
	도봉구	3	0	2	0	1	5	9	1	21
	동대문구	5	15	5	1	2	4	6	1	39
	성동구	5	10	3	1	4	6	4	1	34
	성북구	11	9	6	4	3	7	9	1	50
	소계	58	110	27	11	16	40	50	8	318
서북권	마포구	43	29	9	2	21	3	9	1	116
	서대문구	14	21	7	0	3	4	8	1	57
	은평구	3	15	2	0	1	3	7	1	31
	소계	60	65	18	2	25	10	24	3	204
서남권	강서구	3	15	1	1	1	8	5	1	35
	관악구	3	13	2	2	2	5	7	1	35
	구로구	6	25	1	0	2	10	4	1	49
	금천구	4	14	0	0	2	4	5	1	30
	동작구	9	8	2	0	1	5	8	1	34
	양천구	9	17	2	0	3	6	6	1	44
	영등포구	12	27	2	1	6	5	9	1	63
소계	46	119	10	4	17	43	44	7	290	
동남권	강남구	37	47	10	6	103	12	6	2	223
	강동구	7	22	1	1	1	7	7	1	47
	서초구	35	13	7	6	31	2	5	2	101
	송파구	16	30	5	3	1	7	6	2	70
	소계	95	112	23	16	136	28	24	7	441
계		504	500	144	67	419	135	159	31	1,954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7
----------	------

발의년월일 : 2018년 6월 11일

발 의 자 : 김기만·이혜경 의원(2명)

찬 성 자 : 김인제, 김제리, 박성숙, 신건택,
신원철, 우미경, 우창윤, 황규복
의원(8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도심권에 집중되어 문화접근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 문화시설의 지역별 신설 및 확충과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투자 장려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일부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해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산업 중흥 견인,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
- 나.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장려하고 지원을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
- 다.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에 한해 대부요율을 비영리법인의 경우로 규정함(안 제4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의 제목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6조로 하고,

제43조부터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시설의 자치구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제44조(문화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시장은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문화시설의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 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시설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장 <u>문화예술공간의 설치</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3조(권한의 위임) (생략)</p>	<p>제9장 <u>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u></p> <p>제43조(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 시장은 <u>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시설의 자치구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u></p> <p>제44조(문화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시장은 <u>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u></p> <p>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문화시설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46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43조와 같음)</p>